

技術開發促進法 개정

技術開發準備金 積立對象・使用範圍・擴大
國產新技術製品 製造者 保護措置
技術輸出契約 計劃事前申告 等

- ◇… 政府는 지난 12월 16일 國會에서 通過된 技術開發 促進法을 1977年 12月 31日 …◇
- ◇… 法律 第3095號로 公布하였다. …◇
- ◇… 企業의 技術開發準備金制度를 擴充하여 産業技術의 自主的開發과 導入技術의 消 …◇
- ◇… 化改良을 促進하고 이를 爲한 自體研究施設의 建設을 獎勵하며 新技術의 企業化 …◇
- ◇… 및 國產新技術製品의 保護와 中小企業의 技術指導를 強化하고 産業技術研究組合 …◇
- ◇… 을 設置하며 其他 國內技術의 輸出을 振興하는 등 企業의 技術開發體制를 補完 …◇
- ◇… 擴大함으로써 보다 效率的인 技術開發活動을 誘導助成하기 爲해 개정안이 提出 …◇
- ◇… 되었었다. 다음은 개정된 法律 全文이다. …◇

기술개발 촉진법

(1972. 12. 28 법률 제2399호)
(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95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고 국내기술의 수출을 진흥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 포함한다.
2. “기술개발준비금”이라 함은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말한다
3. “국산신기술제품”이라 함은 신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 및 그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로서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

고 발전시켜 신규성의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으로서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수출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공업소유권 또는 기타 기술을 양도·제공하거나 그 실시에 관한 권리를 허여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①제조업, 건설업, 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에 제기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자,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부수하여 기술을 도입한 자
3.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전략산업분야의 사업자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고

技術開發 促進法

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제 4 조 (준비금의 사용) ①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2. 도입기술의 소화개발
3. 기술정보
4. 기술훈련
5. 연구시설
6. 중소기업 기술지도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준비금의 사용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 (수입업자의 기술개발) 삭제

제 6 조 (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처리자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은 신기술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발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시험연구용의 물품구입과 연구시설의 건설을 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 (조세상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 8 조 (기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제 3 조 및 제 4 조에 규정하는 이외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기술개발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8 조의 2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보호) ①국산신기술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화 시험완료단계 또는 시범제작단계에서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국

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에서 기업화단계까지 투자된 자본의 회수와 적정이율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유사제품의 수입규제 및 동일품목의 중복제조규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산신기술제품의 성능·품질 보장에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정부는 국산신기술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한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제 1 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기술정보지원 등) 정부는 기업체가 기술개발 기타 기업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정부의 공업소유권 등의 사용특례)

①정부가 위탁하는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써 정부에 귀속한 공업소유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용역의 수행자 또는 당해용역수행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공업소유권을 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정부가 위탁하는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용역에 사용된 것으로서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 ①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수출계획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내용 및 제공방법
2. 기술수출의 대가 및 수취방법
3. 계약기간
4. 기대효과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 ①동일 또는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동종의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에 관한 사업
3.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
5.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 1항의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제 6조, 제 8조, 제 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 1항의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 1항의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6조, 제 8조, 제 8조의2, 제10조 및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산업의 기술개발과 적정기술의 도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비금의 적립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 신기술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및 그 기업화에 관한 사항
3. 국산신기술제품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벌칙)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조사 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 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8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적립된 준비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